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28
----------	------

2020년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0. 5. 25.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20. 6. 9.

4. 상정일자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0. 6. 23.)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0. 6. 26.)

-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평생교육진로국장 백정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19년도 말 조 성 액 (a)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 말 조 성 액 (d=a+b-c)	용 자 금 미회수채권 (e)	총 규 모 (f=d+e)
		조 성 계획 (b)	집 행 계획 (c)			
남북교육교류 협 력 기 금	-	1,000,000	353,600	646,400	-	646,400

※ 집행(사용)계획은 남북관계,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528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은 2020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2.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8조의2(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 작성),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19년도 말 조 성 액 (a)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 말 조 성 액 (d=a+b-c)	용 자 금 미화수차권 (e)	총 규 모 (f=d+e)
		조성계획 (b)	집행계획 (c)			
남북교육교류 협력 기 금	-	1,000,000	353,600	646,400	-	646,400

※ 집행(사용)계획은 남북관계,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3. 검토의견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9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동 조례 제14조가 정한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을 신설·운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붙임1을 통해 ①기금운용총칙과 ②자금운용계획을 기재하고 있고, ①기금운용총칙에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비롯하여 기금 조성·운용 주요내용, 자산 관련 주요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②자금운용계획에는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등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됨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0년도에 10억원을 조성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3억 5,400만원을 지출계획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근거하여 지출계획중 사용계획을 제외한 금년도말 조성액은 6억 4,600만원으로 운용계획한 바,

〈표 3-1〉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19년도 말 조성액 ①	'20년도 조성계획		'20년도 말 조성액 ④=①+②-③
	조성계획 ②	사용계획 ③	
-	1,000	354	646

- **수입계획**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10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중 북한체험학습추진(1억원), 남북교육교류사업(2억원) 등의 사업내역에 3억 5,4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 나머지 여유재원 6억 4,600만원을 예치금으로 지출계획한 것임

〈표 3-2〉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수입과목				'20년 수입액 (A)	'19년 수입액 (B)	증감 (A-B)
장	관	항	목			
합계				1,000	0	1,000
내부거래				1,000	0	1,000
전입금				1,000	0	1,000
전입금				1,000	0	1,000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00	0	1,000

〈표 3-3〉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계획				'20년 지출액 (A)	'19년 지출액 (B)	증감 (A-B)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합계				1,000	0	1,000
유아 및 초중등교육				1,000	0	1,000
교수-학습활동지원				1,000	0	1,000
학생생활지도				1,000	0	1,000
학생생활지도지원				1,000	0	1,000
1.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000	0	1,000
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354	0	354
북한체험학습추진				100	0	100
위원회 참석수당				3	0	3
업무추진비				1	0	1
남북교육교류국외여비				50	0	50
남북교육교류사업				200	0	200
나. 예치금				646	0	646

(1) 예치금까지 고유사업에 포함시켜 기금운용부서의 편의가 우선된 지출계획 : 지출계획중 재무활동(예치금) 신설 필요

-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은 재무활동에 해당되는 예치금까지 단 1개의 정책사업(교수-학습활동지원)에 포함시켜 운용계획한 바,
 - 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지출항목이 단 1개의 정책사업내에 편성되어 있어 회계연도중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운용의 편의가 극대화될 수 있으나
 - 현행 관련 법령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정한 것은 기금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기금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료됨
 - 특히, 예치금은 여유재원을 한시적으로 보관하는 지출항목이라는 점에서 개별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서울시의 경우에도 16개 기금 22개 계정을 운용하며 예치금을 고유사업과 동일한 정책 사업에 포함시켜 편성·운용하는 사례가 없음
 - 기금의 지출항목중 예치금을 고유사업과 동일한 정책사업에 편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편성사례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지출항목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보다 행정편의가 우선시된 편성사례로 사료되어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지출계획중 별도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예치금)이 신설되어야 것으로 판단됨

(2) 조례상 수입처리 할 수 없는 수입항목 편성 : 조례상 기금재원을 출연금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전출금으로 편성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기금의 재원을 ①출연금, ②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③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수입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조례가 정하고 있는 기금의 재원(출연금 등)과 실제 편성한 재원(전출금)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검토됨
- 조례에 명시된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예산과목으로 전출금보다 사전절차가 엄격한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에 포함시킨 것은 기금운용부서가 전출금과 출연금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조례가 제정·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출연금**이 아닌 **전입금**이나 **기금전출금**으로 조례상 기금재원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조례 개정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기금운용부서 등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입계획대로 처리할 수 없는 이른바 '수입항목 불일치 편성 사례'를 발생시킨 것으로 사료됨
- 우리 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대로 의결할 경우, 조례를 위반하는 편성 사례를 승인하게 되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기금의 수입계획에 계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기금운용계획

- 관련 법령에는 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 총괄부서는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지난 5월 25일 제출된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제출일 현재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된 것이나
- 지출계획(10억원)중 잉여재원을 예치하는 비중이 64.6%, 6억 4,6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시급히 고유사업의 적극적인 지출이 계획된 것으로 사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킨 이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 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2020. 6. 26.)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

의안 번호	1528
----------	------

제출연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19년도 말 조성액(a)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 말 조성액(e)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규모 (f=d+e)
		조성계획(b)	집행계획(c)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0	1,000,000	353,600	646,400	0	646,400

※ 집행(사용)계획은 남북관계,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참고자료1]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8조의2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

- 시도별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조성 현황: [참고자료2]

- 붙임 1.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
2. 2020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세부 사업 계획(안)

【 불임 1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

I. 기금 운용 총칙

1. 기금 설치 개요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 설치목적: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민의 남북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설치년도: 2020년(신규)

2.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

가. 기금 사업의 목표

- 지속가능한 남북교육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교육 상호 발전 및 한반도 공동 번영, 평화통일 선도

나. 2020년 기금 사업 개요

- 남북 교육 상호 발전 및 신뢰 구축,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학예 분야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인적교류 등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

다. 기금 조성 · 운용 주요 내용

1)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19년도 말 조성액(a)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 말 조성액(e)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규모 (f=d+e)
		조성계획(b)	집행계획(c)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0	1,000,000	353,600	646,400	0	646,400

2)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3)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인, 단체 또는 개인

4) 지원 기준

- 북측과 교류협력 사업 합의 및 통일부 승인을 통한 추진
- 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 정도 및 사업 내용, 사업비 적정성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추진

라.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 천원)

자산구분	'19년 말 잔액(a)	'20년 계획안			증감 (b-a)
		신규	처분	잔액(b)	
합 계	0	1,000,000	353,600	646,400	646,400
금융자산	0	1,000,000	353,600	646,400	646,400
예치금	0	1,000,000	353,600	646,400	646,400

II. 자금 운용 계획

1. 자금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 항목	'20년 수입액	'19년 수입액	증감	지출 항목	'20년 지출액	'19년 지출액	증감
합 계	1,000,000	0	1,000,000	합 계	1,000,000	0	1,000,000
교 특 회 계 전 입 금	1,000,000	0	1,000,000	비 용 자 성 사 업 비	353,600	0	353,600
이 자 수 입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 치 금 회 수	0	0	0	예 치 금	646,400	0	646,400

2. 수입 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과목		산출기초	'20년 수입액 (A)	'19년 수입액 (B)	증감 (A-B)
장	관	항	목		
50000	내부거래				
51000	전입금				
	51100 전입금				
	5110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교육비특별회계 1,000,000	1,000,000	0	1,000,000
20000	자체수입				
24000	이자수입				
	24100 이자수입				
	24101 예금이자수입	• 이자수입	0	0	0
40000	기타				
42000	예치금회수				
	42100 예치금회수				
	42101 예치금회수	• 전년도 이월액	0	0	0
수 입 합 계					

3.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지출계획		목	산출기초	'20년 지출액 (A)	'19년 지출액 (B)	증감 (A-B)
부 문 책	정 단 세 위 부	사업내역				
유아 및 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생생활지도					
	학생생활지도지원	1.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북한체험학습추진*	210-01 50,000,000원×2회= 100,000	100,000	0	100,000
		○위원회 참석 수당	210-06 70,000원×10명×4회= 2,800	2,800	0	2,800
		○업무추진비	230-02 20,000원×10명×4회= 800	800	0	800
		○남북교육교류국외여비	220-02 2,500,000원×10명×2회= 50,000	50,000	0	50,000
		○남북교육교류사업**	320-01 200,000,000원×1식= 200,000	200,000	0	200,000
		○예치금	710-04 646,400,000원×1식= 646,400	646,400	0	646,400
지 출 합 계				1,000,000	0	1,000,000

*북한체험학습추진: 금강산 개성 등 북한 관광 재개 대비(교원 사전답사단 파견 및 학생 참여 사업 추진)

**남북교육교류사업: 유관 기관 및 타부서 등과 협력하여 남북교육교류 사업 추진 및 지원

※ 남북관계, 코로나19 감염병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III.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

1. 성평등 목표

- 남녀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학생들의 통일의식 제고 및 남북 교육교류협력 활성화

2.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 작성 방향

- 남북교류의 특성상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특정할 수는 없으나, 학생 참여 사업 추진 시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고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분류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사업 분류	사업개수	기금운용 계획액 (A)	전년도 계획액 (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 계	1개	1,000,000	0	0	100%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0개	0	0	0	0%
2. 성별영향평가사업	0개	0	0	0	0%
3. 자체선정사업	1개	1,000,000	0	0	100%

4. 기능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부문·정책사업	사업분류			기금운용 계획액 (A)	구성비	전년도 계획액		비교 증감	
	1	2	3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1	1,000,000	100%	0	0%	1,000,000	100%
유아및초중등교육	.	.	1	1,000,000	100%	0	0%	1,000,000	100%
학생생활지도	.	.	1	1,000,000	100%	0	0%	1,000,000	100%

5. 사업별 설명자료

[세부사업명 :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명	북한지역 체험학습 추진(학생 체험학습)	
사업구조	(분야) 교육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단위사업) 학생생활지도
성인지항목	(정책분야)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정책과제)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북한지역 역사유적지, 교육기관, 생태환경 체험을 통한 민족동질감 및 통일의식 제고
 - 사업내용: 남북관계, 국제정세,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점진적 추진
 - 북한 지역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교원 사전 답사단 파견(50,000천원)
 - 학생 대상 북한지역 현장체험학습 추진(50,000천원)
- ※ 위 2가지 사업은 상황에 따라 사제동행으로 추진 가능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대상 사업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	자체선정사업
		○

※ 해당되는 칸에 “○”표시

□ 소요 재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계 획 액 (A)	전년도 계획액 (B)	비교 증감	
			금 액(A-B)	증감률
계	1,000,000	0	1,000,000	100%
교 특 회 계 전 입 금	1,000,000	0	1,000,000	100%
기 부 금	0	0	0	0%
용 자 금 회 수	0	0	0	0%
예 치 금 회 수	0	0	0	0%
이 자 수 입	0	0	0	0%
기 타	0	0	0	0%

□ 성별 수혜 분석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관내 고등학생, 40명)

구 분		Y-3년	Y-2년	Y-1년
전체	사업대상자(A)	명	명	236,689명
	사업수혜자(B)	명	명	40명
	수혜율(B/A)	%	%	0.017%
여성	사업대상자(C)	명	명	115,414명
	사업수혜자(D)	명	명	20명
	수혜율(D/C)	%	%	0.017%
남성	사업대상자(E)	명	명	121,275명
	사업수혜자(F)	명	명	20명
	수혜율(F/E)	%	%	0.016%

※ 사업대상자는 시설물의 경우 동 사업(시설물 등)의 수혜지역 총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은 “불특정 다수” 등으로 기재

※ Y-3~Y-2년은 집행실적, Y-1년은 집행실적 및 집행기준에 의한 추정치

- 예산 구분

(단위 : 천원)

구 分	Y-3년 결산액	Y-2년 결산액	Y-1년 계획액
계			50,000
여성(비율) (D/B)	(%)	(%)	(50 %)
남성(비율) (F/B)	(%)	(%)	(50 %)

□ 성별 격차 원인 분석 및 대책

- 남북교류의 특성상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특정할 수 없으나, 2020년 사업계획 중 학생 대상 북한지역 체험학습 추진 시 서울시교육청 관내 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별도의 성별 기준은 없음

□ 성과 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Y-2년 실적	Y-1년 추정치	Y년 목표치
균등기회 제공	성별수혜율격차			0

※ Y-2년은 집행실적, Y-1년은 집행실적 및 집행기준에 의한 추정치, Y년은 추정치

※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

- 산출근거: (여성 사업 수혜자수 - 남성 사업 수혜자수)/전체 사업 수혜자수

□ 성평등 기대효과

- 남녀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학생의 통일 실천 역량 함양 및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IV. 기금 운용 계획안 부속 서류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a)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	계(b)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지출	
2019	0	0	0	0	0	0	0
2020	1,000,000	1,000,000	0	0	353,600	0	646,400
계	1,000,000	1,000,000	0	0	353,600	0	646,400

2. 예치금 현황

(단위 : 천원)

예치은행	2019년도 현재액(a)	2020년도 현재액(b)	증감 (b-a)	비 고
농협중앙회	0	646,400	646,400	

【 볼임 2 】

2020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세부 사업 계획(안)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 과장 : 윤 여 복(3999-476)
담당장학관 : 손 동 빈(3999-542)	업무담당자 : 지 선 영(6973-983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3. ~ 2020. 12.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2019.7.18. 제7214호)
- 사업목적
 - 남북교육교류협력으로 통일교육 활성화 및 점진적인 평화통일기반 조성

□ 사업내용

- 북한 지역 역사유적지, 교육기관, 생태환경 등 현장체험학습의 단계적 추진
- 북측 교육당국, 학교, 학생 대상 교육분야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19년도 말 조성액(a)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 말 조성액(e)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규모 (f=d+e)
		조성계획(b)	집행계획(c)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0	1,000,000	353,600	646,400	0	646,400

- 집행계획(c) 세부내역

사업 세부 내역	산출 기초	집행액(단위: 천원)
· 북한체험학습추진	50,000,000 원 × 2회 = 100,000,000 원	100,000
· 남북교육교류사업추진	200,000,000 원 × 1식 = 200,000,000 원	200,000
· 위원회 참석 수당	70,000원 × 10명 × 4회 = 2,800,000원	2,800
· 업무추진비	20,000원 × 10명 × 4회 = 800,000원	800
· 남북교육교류 국외여비	2,500,000원 × 10명 × 2회 = 50,000,000원	50,000
	합계	353,600

□ 주요사업 세부 추진 계획

1. 북한 지역 현장체험학습 단계적 추진

○ 목적 및 방향

- 북한 지역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민족동질성 체득 및 평화통일 실천 역량 함양
- 사전답사 및 안전 확보 등을 통한 위험 요인 제거 및 교육 효과성 제고

○ 사업 개요

-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교원 사전 답사단 파견

- 목 적: 체험학습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사전 안전 점검 등
- 답사지: 금강산, 개성(공단), 평양 중 가능 지역 남북 협의 선정
- 답사단 구성: 관내 교원 40명(공모를 통한 참여 교원 선발)
- 교원 사전 답사(안) 예시

▷ 체험학습 코스 및 안전 상태 점검

-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코스 확인 및 점검
- 위험 요소 점검 및 해결 방안 모색

▷ 개성 및 금강산 지역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 개성공단 입주업체 탐방 및 전문인력 수요 현황, 관련 기술 탐색
- 개성 지역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 금강산 지역 생태 환경 보존 상태 확인 및 코스 개발

▷ 평양 역사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 평양 내 고구려 유적지 등 역사교육 현장 탐방
- 평양 내 교육기관 및 과학, 문화 시설 탐방

-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 시범 추진

- 북한 지역 관광 재개 및 안전 확보 이후 추진
- 답사지: 금강산, 개성(공단), 평양 중 가능 지역 남북 협의 선정
- 대상: 관내 고등학생 40명(※ 상황에 따라 사제동행으로 추진 가능)

- 추진 일정(안)

- 교원 사전답사단 파견 및 남북 교육당국 간 협약 체결('20.하반기)
- 안전대책 마련 및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발('20.하반기)
- 학생 대상 체험학습 시범 프로그램 추진('20.하반기)
-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보완('20.하반기)

○ 사업 예산: 금100,000천원(금일억 원)

2.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추진

○ 목적 및 방향

- 국제정세 및 남북 관계 불확실성, 교육당국 간 남북 교류 채널 미비 등으로 인해 기존 교류 채널을 활용한 사업 추진
- 유관 기관 및 부서간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 및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 사업 개요

- 대북교류협력 연계 사업 추진

- 관련 단체 사업 제안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사업 추진
-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북측과의 협의 및 합의 정도 심사를 통한 지원
- 통일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한 기금 집행 타당성 검토
- 기 편성된 총액(2억원) 내에서 사업별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총액에 대해 증액 편성 가능
-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및 대한민국 소재 비영리 법인, 관련 단체
- 연계·협력 사업(예시)

▷ 남북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학술회의

- 북측 참가 정보기술·과학교육, 교수법 혁신 등 미래교육 분야 학술회의
- 북측 교육전문가 및 교육당국과 연계한 남·북·제3국 활용 학술회의
- 학술회의 기간 중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논의 진행

▷ 서울-평양 교육기관 상호탐방 및 생태·환경 공동체험

- 평양/서울 교사양성대학 방문 및 강연, 교사양성과정 토론
- 서울-평양 주요 생태환경 교육 장소 탐방 및 의의 공유

▷ 남북 학생 간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교류

- 남북 청소년 음악제, 오케스트라단 상호 초청 공연 등 문화예술 교류
- 체육회 및 유관기관 협력 다양한 스포츠 분야 교류
- 남북 성인 스포츠 교류 재개 시 협업을 통한 공동 추진

▷ 북한 학교, 학생 등 대상 교육 분야 인도적 지원

- 학생 의식주, 보건, 건강, 교육환경 개선 등 지원·협력 사업

▷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사업 예산: 금200,000천원(금이억원)

참고자료1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5. 기금의 설치 · 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2

시도별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조성 현황

- 기금 조성 시도교육청: 5개 시도(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 시도별 조성 금액(규모)

(단위: 천원)

시도 \ 년도	2019년	2020년	합계
경기	2,000,000	1,000,000	3,000,000 (금삼십억원)
강원	1,700,000	1,100,000	2,800,000 (금이십팔억원)
광주	700,000	200,000	900,000 (금구억원)
전북	100,000	100,000	1,070,000 (금일십억칠천만원) ※ 2011년부터 매년 1억씩 적립(10년), 이자수익 7천만원
전남		100,000	100,000 (금일억원)